



Department of Home Affairs (the Department) (내무부 (이하 '본 기관'))는 호주 국경 수비대를 두고 있습니다. The Privacy Act 1988 (개인정보보호법1988) 은 본 기관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특정 문제들에 관하여 개인에게 통지할 것을 명합니다. 본 양식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통지서입니다.

개인 정보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에 관한 정보 혹은 견해로서 특정 개인을 적절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개인 정보라고 규정합니다.

본 기관은 또한 민감한 특정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는 개인정보법 (Privacy Act) 하에 정의되어 있으며 이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인종 혹은 소수 민족 배경, 성적 지향 혹은 성적 활동, 범죄 기록, 보건 정보 및 생체 정보, 전문직업 혹은 무역 협회 회원, 신앙 혹은 소속, 철학적 신념 및 정치적 기관의 회원 등이 있습니다.

본 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주요 법률은 Migration Act 1958 (the Migration Act) (이민법 1958 (이하 '이민법')) 및 Customs Act 1901 (Customs Act) (관세법 1901 (이하 '관세법')), Immigration (Guardianship of Children) Act 1946 (the IGOC Act) (이민(아동 후견인)법 1946 (이하 'IGOC법')), Excise Act 1901 (the Excise Act) (소비세법 1901 (이하 '소비세법')), Australian Border Force Act 2015 (the Border Force Act) (호주 국경 수비대법 2015 (이하 '국경수비대 법')), Maritime Powers Act 2013 (Maritime Powers Act) (해양법 2013 (이하 '해양법')), 그리고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the Citizenship Act) (호주 시민권법 2007 (이하 '시민권법')) 입니다.

개인 식별 정보

이민법과 시민권법에는 개인 정보의 수집, 사용 및/혹은 공개에 관한 특정 조항이 있는데 생체 정보 ('개인 식별 정보' 라고도 함)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법률들은 개인 식별 정보를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 지문 혹은 핸드 프린트
- 얼굴과 어깨 사진
- 오디오 혹은 비디오 녹화 (몇 가지 제한된 예외를 포함, 이민법을 위한 목적에만 해당)
- 신장 및 체중 수치
- 홍채 스캔
- 개인의 서명, 또는
- 법규에 규정된 기타 식별 정보.

생체 정보 (개인 식별정보)는 아래와 같은 개인으로부터 수집 및/혹은 검증될 수도 있습니다.

- 여행 시 공항에 있는 개인
- (보호 비자 신청인을 포함하여) 호주내 비자 신청인
- 호주 지역사회에 있는 비시민
- 이민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개인
- 호주 시민권 신청인.

본 기관의 업무 및 연락처

본 기관의 사명은 아래 사항에 기여하고 확실히 함으로써 국경을 보호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과 상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 출입국 관리를 통한 호주의 미래
- 난민 보호 및 인도주의 정책에 대한 세계적 기여
- 국경 관리 및 여행자 절차 간소화를 통한 호주 안보
- 국경 세입 및 무역 통계
- 합법적 무역 촉진
- 호주 해양 안보 및 상업적 이익
- 호주 이민법 준수 및 적절한 의사 결정
- 호주 시민권법 집행.

전체 연락처는 본 기관의 웹사이트 www.homeaffairs.gov.au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이 여러분의 정보를 잘못 수집했거나 잘못 취급했다고 믿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 www.homeaffairs.gov.au/feedback 에서 온라인으로 피드백 양식을 작성한다
- 아래 주소로 편지를 쓴다.
The Manager
Global Feedback Unit
GPO Box 241
Melbourne VIC 3001
Australia

본 기관은 누구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가

일반적으로 본 기관 (혹은 본 기관과 계약한 서비스 제공업체)은 본인으로부터 혹은 본인을 대리하도록 권한을 받은 제 삼자로부터 혹은 이민법 하에 정의된 인가된 체계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인가된 체계는 SmartGate 및 기타 자동화된 국경 감시 체계를 포함합니다. 또한 본 기관이 제삼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호주 정부 부서, 법 집행 부서, 외국 정부, 후원자, 의료 종사자, 본인이 지명한 기관, 교육기관, 고용주 및 정보를 가지고 본 기관에 연락하는 일반인들 (예: '제보 전화')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 서비스를 수행하는 대행사 혹은 계약업체

일부 개인 정보는 본 기관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권한을 위임 받은 기타 정부 부서에 의해 대신 수집되고 이용됩니다.

또한 개인 정보가 본 기관을 대신하여 계약업체에 의해 수집 및 이용되기도 합니다. 예로는 출국 및 입국 비행 항공사에 의한 승객 사전 검사, 컴퓨터 시스템, 연구 조사/면담, 이민 억류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본 기관은 계약업체가 호주든 혹은 해외든 장소를 막론하고 개인정보보호 법을 준수할 것을 규정합니다.

법률이 명하거나 위임한 개인 정보의 수집

이민법, IGOC법, 관세법, 소비세법, 해양법, 시민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은 본 기관의 법률 집행을 위해 특정 개인 정보의 수집 권한을 부여하며, 어떤 경우에는 수집을 명합니다.

이민법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본 기관은,

- 비자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민법 56조 참조). 그리고,
- 개인 식별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법 40조 및 46조 참조).

비자 신청자 및 일부 비자 소지자는 상황의 변경 혹은 신청서에 제출된 부정확한 정보에 대하여 본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민법 제104 및 105조).

본 기관은 이민법 및 이민 규정 1994의 목적을 위해 한 두 가지 개인 식별 정보를 더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에 입국할 때, 본 기관이 특정 개인 정보의 제시 (예: 시민을 위한 여권, 그리고 비시민을 위한 비자 및 신분 증명 서류)를 요구할 것입니다. 비시민이 요청된 증명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면, 호주 입국이 거부됩니다 (이민법 257조 참조).

호주에서 출국할 때, 본 기관은 특정 개인 식별 정보의 제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법 257A조 참조).

불법 체류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본 기관이 다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한, 신분 증명 및 비자 상태 (이민법 188 조 참조)
-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신원이나 소재에 관한 서류나 정보의 제공 (이민법 18조 참조).

이민 수용소에 있는 사람은 개인 식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민법 258조 및 261AA(1), 이민 규정 3.30조 참조).

비즈니스 스폰서의 맥락에서, 본 기관 및 Fair Work Ombudsman (FWO) (공정 근로 ombudsman (FWO))은 이민법 2부 디비전 3A 서브디비전 F에 있는 조사권에 따라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법 252항의 수색 권한 목적을 위해, 인가된 담당관은 어떤 사람 혹은 그 사람의 직접 통제 하의 건물에서 발견되는 문서 혹은 기타 물건을 보유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비자를 취소하기 위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담당관은 위조 문서를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 취급 방법을 포함하여 이민법 9부 디비전 1, 그리고 487Z)항 참조).

시민권법

본 기관은 시민권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본 기관은 시민권 신청서와 관련하여 개인 식별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결정권자가 신청자의 신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경우 신청서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법 2부 디비전 5 그리고 17(3), 19D(4), 24(3), 및 30(3)조 참조).

위임자는 위조 문서를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 취급 방법을 포함하여 시민권법 3부 디비전 1 그리고 45B항 참조).

IGOC 법

Immigration (Guardianship of Children) Act 1946 (the IGOC Act) (이민 (아동 후견인) 법 1946 (이하 'IGOC 법')) 및 시행 규칙에 입각하여 이민국경보호부 장관은 부모 혹은 21세 이상의 친척과 동반하지 않고 호주에 도착하는 특정한 미동반 비시민 미성년자 (IGOC 미성년자라고 함)들의 후견인입니다.

후견인 책임을 충족하기 위해 IGOC법은 본 기관 장관이 후견인 권한 및 기능을 연방정부, 주정부 혹은 준주 정부에 위임하도록 합니다 ('위임된 후견인' 이라 칭함).

자발적이고 적합한 사람이나 기관도 IGOC 미성년자의 '보호자 (custodians)' 로 지명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호자는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의 일상적인 돌봄과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IGOC법에 따라 아동의 일상적 돌봄과 복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본 기관은 IGOC 미성년자들 및 이들의 보호자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IGOC 미성년자들의 일상적 돌봄과 복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본 기관은 개인 정보를 아래 사람들 혹은 기관에 공개하거나 이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 아동 복지 기관을 포함하여 주/준주 기관
- 위임된 후견인
- 보호자
- 부모, 돌보는 사람 및/혹은 친척, 그리고/혹은
- 기타 호주 정부 기관.

세관법 및 소비세법

본 기관은 세관법 및 소비세법 그리고 기타 관련된 호주 법률 (이민법 및 세무 법률 포함)의 집행을 위해 다양한 개인 및 사업체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본 기관은 호주 국경을 보호하고 국경 세입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관법 및 소비세법 그리고 세무 법률 하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귀하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본 기관의 양식은 고유의 정보수집 방침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양식은 또한 해당 문서에서 수집되는 개인 정보의 수집, 사용 및 공개에 관한 특정한 정보를 귀하에게 제공하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함께 읽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관세법 64ACA 및 64ACB 조항 하에서 본 기관은 호주에 도착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과 승무원들에 대한 특정한 개인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그 목적은 관세법, 이민법 및 기타 법률의 집행을 위한 것입니다.

해양법

본 기관은 해양 집행 기관에 의한 업무 집행을 위해 개인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권한은 불법 외국인 조업, 세관, 해양 테러 방지, 이민, 검역 및 마약 밀매 그리고 국제 해양 협약 및 조약 등과 관련하여 호주 해양 관련 법률 집행을 지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수집을 허용합니다.

- 법이 승인하는 경우, 법집행 관련 기능을 위한 경우, 혹은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등 민감한 정보 수집
- 기타 개인 정보 수집으로서 본 기관의 기능이나 활동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본 기관의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근거가 되는 법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은 법 하에 특정 목적을 위한 법 집행 기관입니다: *Crimes Act 1914*, *Criminal Code Act 1995*, *Australia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sation Act 1987* (ANSTO Act) 및 *Independent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Monitor Act 2010* (범죄법 1914, 형사법 1995, 호주 핵과학 및 기술 기관법 1987 (ANSTO법) 및 국가 보안 법률 감시법 2010). 이들 법 하의 기능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본 기관의 개인 정보 수집 목적

본 기관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일차적 목적은 이민 및/혹은 시민권 경로, 그리고 국경을 넘는 상품의 이동과 관련된 본 기관의 기능이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 비자 및 이민
- 세무, 보건, 검역, 상업, 범죄, 지적 재산 및 지역사회 보호 법률 등 기타 특정한 호주 법률 집행을 포함한, 관세 및 소비세
- 난민 및 인도주의적 지원
- 국경 관리
- 비자 준수 및 체류 상태 해결
- 이민수용 센터 수용, 추방 혹은 지역 절차 센터로 이송 (법 집행,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정착 등 국외 처리 절차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 및 해외 당국 포함)
- 시민권.

비자, 후원, 무역, 수입 및 수출, 검역 혹은 시민권 신청서에 제출하는 정보는 그러한 일차적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정보가 이차적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본 기관이 개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할 것으로 응당 예상되는 경우이며, 이차적 목적은 (민감한 정보의 경우) 일차적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혹은 (기타 개인 정보의 경우) 일차적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자 신청서에 제출한 정보가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정보의 자유법 1982)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그 후에 제출되는 신청서들과 연관되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이민 문제에 관하여 연락하기 위해 제출된 전자 연락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 기관에 의해 개인 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경우의 결과

개인 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경우, 본 기관은 비자 혹은 시민권 신청서를 처리할 수 없거나 (해당되는 경우) 무역, 수입, 수출 및 검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면 본 기관의 법적 의무 (특히 법률 준수와 관련하여), 보호 의무, 또는 호주의 국제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본 기관의 역량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삼자에 대한 개인 정보의 일반적 공개

지정된 대리인에게 공개

가령, 가족 구성원이나 이민 대행인, 통관 대행인, 여행사 및 항공사 직원, 옴부즈맨, 국회의원, 혹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한 경우, 비공개를 본 기관에 요청하지 않은 한 개인 정보가 그러한 제삼자에게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본인이 후원하고 있는 사람이나 본인의 후원자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부 부서에 일반적 공개

본 기관은 특정 상황에서 국경수비대 법 혹은 기타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 정보를 다른 정부 기관에 공개할 권한 혹은 허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그 기능과 활동을 집행하도록 혹은 다른 기관으로 하여금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원 확인이나, 제출한 서류의 신빙성 입증, 데이터 대조, 혹은 준수 의무 관리를 위해 공개하는 것 등입니다.

본 기관과 정보를 교환하는 정부 부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후생부 (DHS), *Social Security Act 1991* (사회 보장법 1991), *Child Support (Assessment) Act 1989* (아동 지원(평가) 법 1989) 및 *Child Support (Registration and Collection) Act 1988* (아동 지원 (등록 및 수집) 법 1988) 집행
- 사회복지 서비스부
- 농업부, 호주의 생체 보안 시스템 관리 및 *Quarantine Act 1908* (검역법 1908), *Export Control Act 1982* (수출관리 법 1982) 및 *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 (수입식품 관리법 1992) 집행
- 치료제 관리
- 산업혁신과학부
- Australian Sports Anti-Doping Authority (호주 스포츠 도핑방지 기관), *National Anti-Doping Scheme* (국립 도핑방지 제도) 집행
- 교육부,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 (유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 법 2000)을 위한 업무 집행
- 고용 기술 소기업 가족기업부, 고용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데이터를 대조
- 재향군인부, *Veterans' Entitlements Act 1986* (재향군인 자격 법 1986) 집행
- 호주 국세청 (ATO),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소득세 부과법 1997) 및 기타 세제법 집행
- 공정근로 옴부즈맨 (FWO), *Fair Work Act 2009* (공정근로법 2009) 집행
- 외교통상부 (DFAT), *Australian Passport Act 2005* (호주 여권법 2005) 집행 및 보호 비자 처리를 위한 국가 정보 획득. 외국 여권에 대해서는 이중 국적 소지가 가능할 수도 있음
- 호주 선거위원회,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연방정부 선거법 1918) 집행을 위해.

심사, 감사 및 조사 기관

어떠한 결정에 대하여 사실 심사 혹은 사법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본 기관은 심사를 수행하는 재판소 혹은 법원에 관련된 개인 정보를 제출할 것입니다.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사 기관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 연방 옴부즈맨
- 호주 정보청
- 호주 감사원
- 호주 인권위원회
- 공정 근로 옴부즈맨.

응급상황 및 법 집행

응급상황, 심각한 상해 혹은 사망의 경우에 귀하의 개인정보가 호주 법 집행 부서 혹은 응급 서비스에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범죄 행위의 예방, 구금, 조사 및 기소 혹은 처벌을 포함하여 법집행 활동이 필요한 경우, 호주 (연방정부, 주 및 준주 정부) 및 외국 법집행 기관이나 단체에 정보를 공개합니다.

지원 프로그램

비자 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가 다음 부서에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 정착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부
- 영어 연수를 용이하게 하고 모니터링하는 산업혁신과학부.

면허발급 당국에 공개

호주에서 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본 기관은 체류 상태와 근로 자격 및 일부의 경우 호주 시민권 취득 여부에 관한 정보를 관련 당국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는 면허증 소지를 위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또한 귀하가 관세법 하에 특정한 면허증을 신청할 경우 시행될 수도 있는 특정한 공개가 있습니다.

위임 받은 개인 정보의 공개

‘개인 식별 정보’는 1페이지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본 기관은 이민법 4A 부 및 시민권법 43조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있습니다. 예:

- 시민권 혹은 비자 상태 입증을 위해
- 형법 집행을 위해
- 호주 정부 부서와의 협약에 따른 신원 확인 정보 교환
- 법원, 재판소 혹은 조사 기관이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호주 법률이 명하는 경우.

또한 본 기관은 시민권법에 따라, 시민권 혹은 이민 법률의 목적을 위해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이민법 4A부는 다음 상황에서 개인 정보 (개인 식별 정보 포함)를 공개할 권한을 본 기관에 부여합니다.

- 다음 사항을 위한 데이터 대조:
 - 신원 확인, 또는 신원의 진위 여부 확인
 - 호주 입국 또는 출국 절차의 촉진
 - 범죄 전력자, 우려 인물, 또는 국가적 보안 우려가 있는 비시민 체류자 파악
 - 이민에 관련된 거짓 서류 방지 및 사기 파악
 - 보호 비자 처리 지원
- 신원 확인 또는 소재지 파악 (또한 이민법 33FA 및 33FC 조 참조)을 위해
- 호주 감사원 및 호주 인권위원회와 같은 규정된 조사 기관에 공개
- 호주로부터 추방 또는 범죄인을 호주로 데려오거나 외국으로 보내기 위해 외국 정부와 본국 송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 특정 외국 정부, 외국 정부의 법 집행 혹은 국경관리 기관, 혹은 이민 문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국제 조직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민법 5A(3) 조 참조)
- 국제 범죄 문제에서 도움을 주고 받기 위해.

개인 식별 정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양식 1243i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노동 비자와 관련하여, 본 기관은 스폰서 혹은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특정 개인 정보를 상응하는 비자 소지자 혹은 스폰서에게 공개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민법 140ZH 조 및 규정 2.103, 2.104 및 2.105 참조).

본 기관은 또한 국경수비대 법 파트 6에서 명시된 제한된 상황에서 이민 및 국경 보호 정보 (국경 수비대 법 제 4(1) 조 참조)인 개인 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국경 수비대 법은 아래 기관에 대한 공개를 허가합니다.

- 연방정부, 주, 준주 기관 혹은 당국
- 호주 연방 경찰 (AFP) 혹은 경찰, 혹은 주 및 준주 서비스

- 검시관
 - 연방정부, 주 혹은 준주 법정 사무소 보유자 (예: 음부즈먼)
 - 호주 국경 수비대 (Secrecy and Disclosure) (비밀 및 공개) 규정 2015에서 규정된 단체 혹은 사람. 예: 호주 적십자사
 - 외국 혹은 공공 국제 기관.
- 하지만 국경 수비대 법 파트 6의 특정 요건에 더하여, 국경 수비대 법 하의 개인 정보 공개는 국경 수비대 법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허용된 목적’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 경우에 한해서 위의 기관 중 하나에 인가됩니다. 예를 들어, 정보 공개가 아래 목적 중 하나를 위한 것입니다.
- 형사법 혹은 상업 관련 법의 집행 혹은 관리
 - 검시, 조사 혹은 문의 지원
 - 공공 보건 혹은 한 명 이상의 생명 혹은 안전 보호
 - *Census and Statistics Act 1905* (인구조사 및 통계법 1905) 혹은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ct 1975* (호주 통계청 법 1975) 하의 수집 혹은 통계 검증
 - 공공 세입 보호
 - 신원 파악 혹은 시민권이나 비자 상태 검증
 - 호주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
 - 국가 도핑 방지 제도 집행
 - 호주와 외국 사이의 이민, 검역 혹은 국경 관리에 관련된 목적
 - *Customs Act, Migration Act, Maritime Powers Act, Citizenship Act, IGOC Act*, (관세법, 이민법, 해양법, 시민권법, IGOC 법 등)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들
 - 국방 혹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목적.

본 기관은 또한 개인이 정보 공개에 동의하거나 공개가 한 개인의 생명 혹은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방지 혹은 경감하는데 필요하거나 정보가 이미 법적으로 대중에게 공개 가능하게 된 경우 보호된 개인 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경 수비대 법 51조항은 해당 법 파트 6에서의 특정 조항에 따른 공개가 개인정보보호 법의 목적을 위해 해당 법이 인가한 공개로 여겨질 것임을 규정합니다.

또한 이민 및 국경 보호 정보 공개는 본 기관의 위임된 사람의 고용 혹은 서비스 과정에서 이루어질 경우 국경 수비대 법 하에서 허용됩니다. 본 기관은 그러한 공개가 개인정보보호 법을 준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본 기관은 또한 관세법 및 규칙 등 관세 관련 법규에서 고려된 제한된 상황에서 보호된 개인 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동 기록 공개

호주를 다녀가는 여행자의 입국 및 출국 기록이 이동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이 기록이 다음 목적으로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 이민법
- *Family Law Act 1975* (가정법 1975)
- 관세 혹은 소비세 법
- 검역 혹은 보건 법
- 법 집행
-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 (유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 법 2000)
- 첫 주택 소유주 프로그램 혹은 아동 및/혹은 복지 프로그램의 시행과 같이, 규정된 연방, 주 혹은 준주 법률.

법 집행 및 관련 목적을 위한 공개

법 집행 및 관련 목적 (이민법 및 시민권법 하의 목적 및 기타 집행 기관 하의 활동 목적을 포함)을 위해 본 기관에 의한 공개 대상은 대체로 아래를 포함합니다.

- 신원조회 요건을 평가하고 시행하기 위한, 호주 및 해외 법 집행 부서
- 이민 사기, 국가 보안 문제, 혹은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연루 용의자에 대한 신원 파악 혹은 조사를 위한, 호주와 해외 법 집행 부서 및 정보 부서 혹은 위원회, 국가 경찰 서비스, 인터폴, 국경선 대상지역 센터, CrimTrac, AusTRAC, 규제 위원회, 의회 조사위원회, 국제 재판소 및 해외 이민 당국
- *Law Enforcement Integrity Commissioner Act 2006* (법집행 위원회 법 2006)을 집행하기 위한, 호주 법집행 위원회
- 근로에 관련된 비자 조건 위반 근로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ATO, DHS 및 기타 연방 혹은 주 및 준주 부서
- 불법 체류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AFP 및 호주 경찰
- 이민 혹은 시민권 범죄를 기소하는 검찰총장
-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기 위한 해외 정부
- 비자 조건 및 후원 의무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벌칙 부과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FWO, 등록된 교육기관, 고용주, 후원 받는 사람, 후원자 및 노동력 제공업체
- 법 집행 혹은 국가 보안 문제 파악을 위한, 난민과 인도주의 프로그램 하에서 비자 신청인 및 제안자들의 개인 정보와 연관된, AFP를 포함한 법 집행 기관들.

법 집행 기관으로서 본 기관의 정보 공개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은 법 하에 특정 목적을 위한 법 집행 기관입니다: *Crimes Act 1914*, *Criminal Code Act 1995*, *Australia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sation Act 1987* (ANSTO Act) 및 *Independent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Monitor Act 2010* (범죄법 1914, 형사법 1995, 호주 핵과학 및 기술 기관법 1987 (ANSTO법) 및 국가 보안 법률 감시법 2010). 본 기관은 이들 법 하에서 본 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와 연관된 기타 공개

재정 보증

재정 보증 제공자들과 관련된 정보는 예치된 보증금의 반환 혹은 초래된 부채의 확인 및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센터링크에 공개될 것입니다.

고용, 노동력 제공 및 비즈니스 기술

본 기관은 근로자의 체류 상태, 근로 자격 및 근로 유형 그리고 비자 기간을 고용주, 노동력 제공업체 및 노동력 제공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삼자에게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를 신청할 때 본 기관이 근로 자격에 관한 정보를 고용주나 노동력 제공업체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비즈니스 기술 이민자들에게 정부의 비즈니스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도움을 주는 주 및 준주의 경제 개발 부서 및 관공서에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연수 및 교육

개인 정보가 다음을 대상으로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 호주에서 연수 또는 학업 기회를 찾는 사람들을 돕는, DFAT, 산업부 및 교육부
- 제안된 근로 실습 요소가 호주 노동 시장에 끼칠 영향력을 결정하는 고용부
- 일부 비자 클래스의 해외 자격을 평가하는, 교육부 및 위임 당국

- 성인 이민자 영어 프로그램에 따라 영어 수업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 교육 기관의 규제 목적을 위한 정부 부처.

건강

비자 신청을 위해 평가된 신청자나 신청자 가족의 건강 내역이, 비자 발급을 위한 건강 요건 충족 여부의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또는 건강 요건이 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또는 공공 보건 위험 관리를 위해, 정부 보건 당국에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난민 및 인도주의 입국, 그리고 국내 보호

본 기관은 난민 및 인도주의 입국자 그리고 이들의 옹호자들 (적용 가능한 경우)의 개인 정보를, 인도주의 정착 서비스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제공업체와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본 기관은 신원 확인, 및 인도주의 요청 혹은 보호 요청의 진위 확인을 위해, 망명 신청자 및 보호 혹은 인도주의 비자 신청자들과 관련된 정보를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UNHCR)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이민 기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

본 기관은 이민수용소의 수용자와 관련된 개인 정보를 다음 기관 및 관계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대안적 수용 협정, 동반자 없는 미성년자의 보호, 신체 및 정신 질환 장애를 가진 수용자의 후견인 직무와 관련된, 주 및 준주 복지 부서
- 이송을 촉진하고 체류 상태를 확정하기 위한, 주 및 준주 교정 서비스
- 이송을 지원하기 위한 국외 절차 서비스 제공업체
- 학교, 의료 종사자 및 보건, 복지 서비스 제공업체,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본인 혹은 가족의 출국을 지원하기 위한 옵션을 평가하는 이민 상담사.

아동의 복지 및 보호

아동, 및/혹은 아동의 부모/후견인/보호자의 개인 정보가 다음 사항을 위해 아동 복지 및 보호 부서, 주/준주 아동 복지 기관, 주/준주 경찰 혹은 기타 관련된 호주 정부 부처에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 이민 억류 및/혹은 지역사회에서의 보호와 복지를 준비하고 모니터 하기 위해
- 있을 수 있는 학대 혹은 방치를 조사하기 위해
- 여행 준비 및 서류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입양 목적으로 호주에 입국하는 아동 관련 정보가 주 및 준주의 복지 단체, 호주 입양 중앙청 및 호주 국가간 입양 기관에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여행 서류 취득을 위해 대사관, 고등 판무관실 및 영사관에 제출되는 정보

출국을 근거로 비자를 받았거나 호주에 남아 있을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그 사람은 출국하는 것으로 요구됩니다. 그 사람이 합당한 기간 이내에 유효한 여행 서류를 보유 또는 취득하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을 대신하여 이를 신청하는 것이 본 기관의 일반적 관행입니다. 이렇게 하여 출국 준비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본 기관은 여행 서류의 제공을 촉진 하기 위하여 해당 대사관, 고등 판무관 혹은 영사관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명, 현재 여권의 세부사항 혹은 다른 신분증 및 연락처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

본 기관은 개인 식별 정보 이외의 개인 정보를 다음 기관 혹은 관계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시민권 축하행사를 관리하고 주관하기 위한, 지방 정부 의회 및 기타 단체
- 호주 훈장 신청을 고려하기 위한, 총독 비서실 및 총리내각부
- 새로운 시민을 호주 공동체로 환영하기 위한, 국회의원과 시의원.

이민 리서치

개인 정보는 현재 및 과거 고객의 설문조사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정책 및/혹은 프로그램 개발 목적을 위한 연구, 조사, 분석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부서 혹은 계약된 제삼자에게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은 그 용도를 진술된 연구 목적으로 제한하며 완료와 동시에 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연구를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데이터는 공개되기 전에 신원 확인이 되지 않게 처리됩니다.

개인 정보가 신규 입국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연구와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 및 정착 결과의 분석을 촉진하기 위해 호주 통계청에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입국자 관련 정보가 정착 계획을 돕거나 정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 및 준주의 부서 혹은 이민 서비스 기관에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국제 행사

주요 스포츠 시합이나 게임: 국제적 국가 정상 회의: 사회적, 문화적 혹은 종교적인 세계적 회합 혹은 축제 등과 같은 주요 국제 행사에서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주 및 준주 부서를 포함한, 호주의 정부 부서에 개인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여러분의 준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호주 및 국제 기구,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함께 민감하지 않은 정보를 사용하고 공개할 것입니다.

본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정보

본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본 기관의 웹사이트 <https://www.homeaffairs.gov.au/access-and-accountability/our-commitments/privacy> 이용 가능합니다.

해당 정책에는 다음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본 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거나 그 정보의 수정을 추구할 수도 있는 방법
-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관하여 불만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 및 본 기관의 불만제기 취급 절차.

해외 수취자에게 정보 공개

본 기관은, 데이터 전송 및 저장을 위해, 해외에 소재한 업체를 포함하여, 외부의 IT 계약업체들을 이용합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본 기관이 해외 수취자에게 개인 정보를 공개합니다. 종종 수취자는 본인이 평상시 거주하는 나라이거나 출국했던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로부터 보호를 신청함으로써 난민 신청서의 평가가 종결되기를 기다리지 않는 한). 여기에는 승객 사전 검사 및 전자 비자 처리와 관련하여 항공사 혹은 여행사 직원에게 공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본 기관은 호주와 정보 공유 협정을 맺은 국가들 혹은 국제 단체와 정보를 교환합니다. 이들 국가의 예는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미국, 영국, 캐나다 및 뉴질랜드입니다. 이들 정보 교환은 생체 정보 (개인 식별 정보) 공유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식별 정보와 필적되는 경우, 본 기관은 인적사항, 여행 및 기타 신분 서류 사본 혹은 이러한 서류의 정보, 이민 상태 및 이민 내력 (이민 사기 및 위반이 포함될 수도 있음) 그리고 관련된 범죄 내력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의 목적은 신원 확인을 돕고 동일한 신분으로 유사한 요구를 다른 부서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정 국가의 정부에 반하는 주장을 근거로 해외 인도주의 비자 혹은 보호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본 기관은 신청자가 호주에 있지 않고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인 정보를 그 정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 그 나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거나 동의하였다. 또는
- 호주가 보호 의무를 져야 할 사람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홈페이지 www.homeaffairs.gov.au

일반 문의 전화 호주 내에서는 근무 시간 중에 131 881 번으로 전화하여 교환원에게 말씀하십시오 (근무 시간 외에는 녹음된 정보 이용 가능). 호주 밖에 계시면, 가장 가까운 호주 공관에 연락하십시오.